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제262회 1차 정례회

# 검토 보고서

2023. 6. 13.(화)

검 토 안 건	발 의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 복지도시위원회 (전문위원 장홍용)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검 토 보 고

(보고자 : 전문위원 장홍용)

#### 1. 제안경위

○ 제안자 : 마포구청장(장애인동행과)

○ 제안일 : 2023. 5. 19.

○ 회부일 : 2023. 5. 25. (의안번호 : 23-61)

## 2. 제안이유

○ 장애인 편의를 위해 전동보장구 지원이 확대되고,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전동보장구(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을 지원하여 운행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고 전동보장구 사용에 따른 불안감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 제2조)
- 보험가입대상 및 보험회사의 선정(안 제3조 ~ 제4조)
- 보험료 납부 및 보험료 보장기준 등(안 제5조 ~ 제6조)
- 보험금의 청구 및 보험금 지원 제외(안 제7조 ~ 제8조)

####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 입법예고 : 2023. 3. 16. ~ 4. 5. (제출된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마포구청장이 발의하여 복지도시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으로 전동보장구(전동스쿠터,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가입"을 지원하여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고 전동보장구 사용에 따른 불안감과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 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고
  - 안 제3조에서 4조까지는 보험가입대상 및 보험회사의 선정을 규정하였으며,
  - 안 제5조에서 6조까지는 보험료 납부 및 보험료 보장기준 등을,
  - 안 제7조에서 8조까지는 보험금의 청구 및 보험금 지원 제외를 규정하는 등 총 8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 2003년부터 보급·확산된 전동보장구는 생활영역이 제한되었던 뇌 병변·지체 장애인에게는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집안에서만 있을 수밖에 없었던 심한 장애인들이 거리로 나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듦.
  - 전동보장구는 도로교통법 상 '보행자'로 분류돼 인도만을 이용해야 하며, 현재 시판되는 전동보장구는 시속 10km ~15km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지만 급제동의 문제점 등으로 보행자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으며, 또한 도로변으로 이동하다 교통사고를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하지만 전동보장구 사용자와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람 모두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전동보장구 이용자들이 난처한 경우를 당하는 상황이 발 생하고 있음.
  - 사고가 빈번함에도 사고 예방이나 보험제도 등의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안전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어, 사고 발생 시 초래되는 갖가지 부작용을 해소하고 장애인의 경제 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이 필요함.
- "전동보장구"는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를 의미하는데, 장애인 사회활동과 이동 반경을 확대해주는 장애인 복지에 필수적인 보조기기인 만큼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을 통해장애인 복지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314호, 2005. 4. 22. 개정ㆍ시행)이 개정되면서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가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험급여 기준에 처음 적용됨.

-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구 증가 및 고령화로 인해 전동 보장구 사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추후 계속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장애인복지법 제9조를 보면 지방자치단체 는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 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 는 기본적인 수단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 및 이동권 보장 등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
- 다만, 전동보장구 이용증가에 따라 전동보장구 사용자와 피해 를 입는 사람 모두를 적절하게 보호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보 험가입 지원 뿐 아니라 안전교육 등도 반드시 실시해야 될 것 으로 판단됨.

<장애인 전동보장구 필요 및 소지 현황>

필요 및 소지별	전동보장구 종류별	2014		2017		2020	
		비율(%)	추정수(명)	비율(%)	추정수(명)	비율(%)	추정수(명)
필요	전동휠체어	9.5	154,581	8.5	131,512	9.1	133,193
	전동스쿠터	6.7	109,249	6.2	96,152	5.0	73,094
소지	전동휠체어	3.7	59,748	4.1	63,015	6.1	90,037
	전동스쿠터	3.2	52,456	2.6	39,578	3.6	52,510

#### 참고자료

#### 1. 관련법령

#### 장애인복지법

-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 ② 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언어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 제9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발생을 예방하고, 장애의 조기 발견에 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며,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을 보호하여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시킬 책임을 진다.

####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2. "보조기기"란 장애인등의 신체적·정신적 기능을 향상·보완하고 일상 활동의 편의를 돕기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기계·기구·장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2. 서울시 자치구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현황

## 불임

## 장애인 전동보장구 이용자 현황

□ 서울시 장애인 전통보장구 이용자 : 총 12,801명

('17년~'21년 누적 기준, 단위 : 명)

자치구	총계	저소득층 장애인 (기초수급자 + 차상위장애인)			일반 장애인			
		소계	전 동 휠체어	전 동 스쿠터	소계	전 동 휠체어	전 동 스쿠터	
총	계	12,801	5,743	2,482	3,261	7,058	3,089	3,969
종 로	! 구	143	59	21	38	84	27	57
중	구	127	50	11	39	77	22	55
용 신	구 :	149	64	32	32	85	40	45
성 동	구	277	78	21	57	199	69	130
광 진	구	265	71	24	47	194	65	129
동 대	문 구	453	171	65	106	282	117	165
중 링	구	841	397	157	240	444	155	289
성 북	구	422	149	65	84	273	104	169
강 북	구	760	351	142	209	409	131	278
도 봉	구	454	138	72	66	316	161	15
노 원	! 구	1,501	918	420	498	583	276	307
은 평	구	596	184	76	108	412	216	196
서 대·	문구	248	60	28	32	188	78	110
마 포	구	394	155	70	85	239	129	110
양 천	구	523	197	86	111	326	137	189
강 사	구	1,517	922	390	532	595	261	. 334
구 로	. 구	522	126	42	84	396	202	194
금 천	구	361	169	64	105	192	75	117
영 등	포구	365	112	47	65	253	113	140
동 직	구	451	219	112	107	232	106	126
관 익	구	451	193	81	112	258	123	135
서 초	구	199	80	44	36	119	59	60
강 님	구	670	425	180	245	245	107	138
송 피	7	579	246	126	120	333	157	176
강 동	구	533	209	106	103	324	159	165

출처: 건강보험공단

## 3. 장애인 전동보장구

